

		시 민	
문서번호	교육홍보과-478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결재일자	2014.2.10.		서울시립미술관장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추여명	02/10 김흥희
방침번호		협 조	이성규 정창훈
		경영지원부장 총무과장	

**2014년 서울시립미술관
교육 강사료·원고료 지급 기준 계획**

2014. 2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문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브즈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빗물순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우리말 <input type="checkbox"/> 무 ■
타자원 의용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산하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등 지급기준 계획

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교육 등에 출강하는 강사의 강사료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책정함으로써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교육 운영으로 공공미술관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I 추진 방향 및 관련 근거

□ 추진 방향

- 우수강사 확보 및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보상 기준 수립
- 타 기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하되 2014년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예산편성을 근거로 지급기준 책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미술관 소속 공무원이 미술관 내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를 진행할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 미지급

□ 관련 근거

- 201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14)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2013.12.31 개정)

- 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2014년 미술관 강사료·원고료 예산편성액 : 74.970천원(원고료 4,620, 강사료 70,350)

○ 미술아카데미 운영

- 성인 이론강좌 원고료 : 4,620천원(11,000원×6면×70회)
- 시민미술아카데미 강사료 : 42,850천원

- 특별 1급(2시간 기준) : 2,000천원(400,000원×5회)
 - 일반 1급(2시간 기준) : 19,800천원(220,000원×90회)
 - 일반 2급(2시간 기준) : 17,850천원(170,000원×105회)
 - 보조 강사(2시간 기준) : 3,200천원(80,000원×40회)
-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강사료 : 27,500천원
- 성인, 청소년 감상교실 강사료(2시간 기준) : 9,990천원(220,000원×45회)
 - 어린이, 청소년 체험수업 일반 강사료(2시간 기준) : 12,100천원(220,000원×55회)
 - 어린이, 청소년 체험수업 일반 강사료(2시간 기준) : 5,500천원(100,000원×55회)

II 타 기관 지급 기준

□ 타 기관 대상별 지급 기준(2013. 12. 현재)

구 분	대상별 지급 기준 비교				
	특별강사 1급	일반1급	일반2급	기타강사	비고
대 상	장관, 차관, 대학총장, 부총장, 사립 박물관 미술관 관장,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종교인, 기업대표 등	박사학위 소지자, 미술이론가, 연구기관의 연구원, 언론인, 대학교수 및 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체험실기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해당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학교 강사, 어린이 청소년 교육강사, 작가 등	각종 교육운영(실기실 습 보조자), 기타 교육기관에 출강하는자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400,000 (300,000)	200,000 (100,000)	80,000 (50,000)	40,000 (40,000)	
서울시립미술관	250,000 (150,000)	150,000 (70,000)	100,000 (70,000)	40,000 (40,000)	
서울시인재개발원	400,000 (300,000)	200,000 (100,000)	80,000 (50,000)	40,000 (40,000)	
서울역사박물관	300,000 (200,000)	120,000 (80,000)	80,000 (50,000)	70,000 (30,000)	
국립현대미술관	400,000 (300,000)	230,000 (120,000)	80,000 (40,000)	50,000 (20,000)	
부산시립미술관	400,000 (300,000)	200,000 (100,000)	120,000 (80,000)	40,000 (40,000)	

Ⅲ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안

2014년 강사료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지급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명망이 높은 유명 문화예술인, 종교인, 기업대표(급) ○ 인간문화재 ○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관장이 필요한 경우 	250,000	150,000
일반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이론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 언론인 ○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기타 교육운영상 관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0,000
일반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실기 강사 ○ 예술가 ○ 어린이 청소년 교육 강사 ○ 기타 교육운영상 관장이 필요한 경우 	100,000	70,000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운영(실기 실습 등) 보조자 ○ 기타 교육운영상 관장이 필요한 경우 	40,000	40,000
특 칙	<p>※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관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p> <p>※ 위 지급기준으로 초빙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1개 등급에 관하여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2014년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 급 비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시행일 : 2014. 1. 1.

- ※ 불 입 : 1. 201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 기준(2013)
 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2012)
 3. 국립현대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2013)
 4.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 기준(2013) 각 1부. 끝.

□ 붙임 1.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상 강사료 지급 기준(2013)

① 강사료 지급기준

▶ 일반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총장(급) 인간문화재 대기업총수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국영기업체 사장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정교수 이상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300,000	200,000
일반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대표 컨설턴트(박사학위 소지) 변호사, 법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박사학위 소지), 언론인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기초지방의회의원 3급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4급·5급 공무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이상 공무원 	200,000	100,000
일반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박사학위 소지), 언론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4급·5급 공무원 	120,000	80,000
일반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학원 강사, 정보화교육 강사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80,000	50,000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용	폐지		
특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지급기준으로 초빙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1개 등급에 관하여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기준은 비상설 특강 강사에게 적용되며, 상설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대사, 판사 등 일반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붙임 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2012)

2012년 강사료 지급기준표

① 일반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 본 1 시 간	초 과 시 간
특 별 1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300,000
특 별 2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일 반 1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교수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200,000	100,000
일 반 2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80,000
일 반 3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 조 강 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 어 강 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500,000 이내	500,000 이내

※ 별도기준, 일반3급, 보조강사, 원어강의 지급기준은 종전과 동일

②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 급 단 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 급 한 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 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 정 방 법	수정 매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붙임 3. 국립현대 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2013)

2013년도 교육강사료 · 원고료 지급(안)

□ 검토 필요성

- 현행 교육강사료 지급기준(2009)은 현실적으로 최적의 강사 섭외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강사료 지급과의 큰 괴리로 기준의 의미 상실
- 2013년도 교육강사료 지급기준 현실화로 우수강사 유치 및 미술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등 준수)

□ 2013년도 교육강사료 지급기준(안)

구 분	지급기준	지급기준	현행단가 (만원)	개정단가 (만원)	비 고
강 사 료	특별강사 (가)급 :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과정상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최초 1시간	기관장 별도 책정	40	○ 전·현직 장관(급), 대학총장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	30	
	특별강사 (나)급 :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과정상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최초1시간	15	30	○ 전·현직 차관(급), 부총장, 학장, 3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20	
	일반강사 (가)급 : 전임 강사, 4급 공무원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최초1시간	12	23	○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 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특강 이외 기성작가(인지도 등 종합 고려), 기관·단체 대표 등
		초과 (매시간)	6	12	
일반강사 (나)급 : 시간 강사, 5급 공무원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최초1시간	8	12	○ 시간강사,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 및 일반강사(가)급 이외 작가(신진작가 등)	
	초과 (매시간)	4	10		
청소년·어린이 대상 교육 강사	최초1시간	6	8	○ 미술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등	
	초과 (매시간)	3	4		
보조강사	최초1시간	4	5		
	초과 (매시간)	2	2		

-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관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 ※ 복수의 주·보조 강사는 수업의 성격과 업무량을 감안, 교육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여비는 강사 초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준용

□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 가능

§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 붙임 4.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3)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개정 전)	
		기본1시간	초과1시간
특별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현직 장·차관(급) ◦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 국회의원(급) ◦ 3급 이상 국·공립박물관 및 이에 준하는 사립박물관 관장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300,000 (250,000)	200,000 (150,000)
특별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 3급 이상 국·공립박물관 실장 및 이에 준하는 사립박물관 실장 ◦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교수 ◦ 전·현직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무형문화재, 유명예술인, 종교인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 (120,000)	100,000 (60,000)
특별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수료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교육운영상 박물관장이 인정한 경우로서 외래강사이며 특별 2급에 속하지 않는 자 	120,000 (100,000)	80,000 (50,000)
일반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또는 실기 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진행을 위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80,000 (80,000)	50,000 (40,000)
기타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또는 실기 교육 60시간 미만 경력자 	70,000 (70,000)	30,000 (30,000)
원 고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필자로서 200자 원고지 1매당 (최대 30매까지 지급) 	10,000 (5,000)	